

『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12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20일

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

2011년 7월 19일

제16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이 춘 배

나. 제안이유

- 학교급식 여건 변화에 따라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근거 마련과 학교급식 질 향상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식생활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개정(안 제1조)
- 용어의 정의에 “무상급식” 조항 신설(안 제2조제3호)
-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(안 제2조제4호)
- 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“급식경비 지원”, “지원방법”, “지원신청”, “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”에 관한 사항 개정
(안 제3조제3항, 제5조제3항, 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)
- 심의위원회 기능에 “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” 사항 신설(안 제9조제5호)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“교육청”명칭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조문 정비
(안 제8조제2항2호, 제10조제2항제5호·제6호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학교급식법」 제10조
 -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4조
 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
 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- 학교급식 여건 변화에 따라 무상급식실시를 위한 근거마련과 학교급식 질 향상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,

-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는 필요 경비를 지원하도록 추가
- 용어의 정의에 무상급식 조항을 신설, 학교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경비지원, 지원방법, 지원신청, 지원대상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
-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강화 개정
-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학교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에 대한 내역을 신설
- 특히, 무상급식과 급식경비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토록 개정된 사항이므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